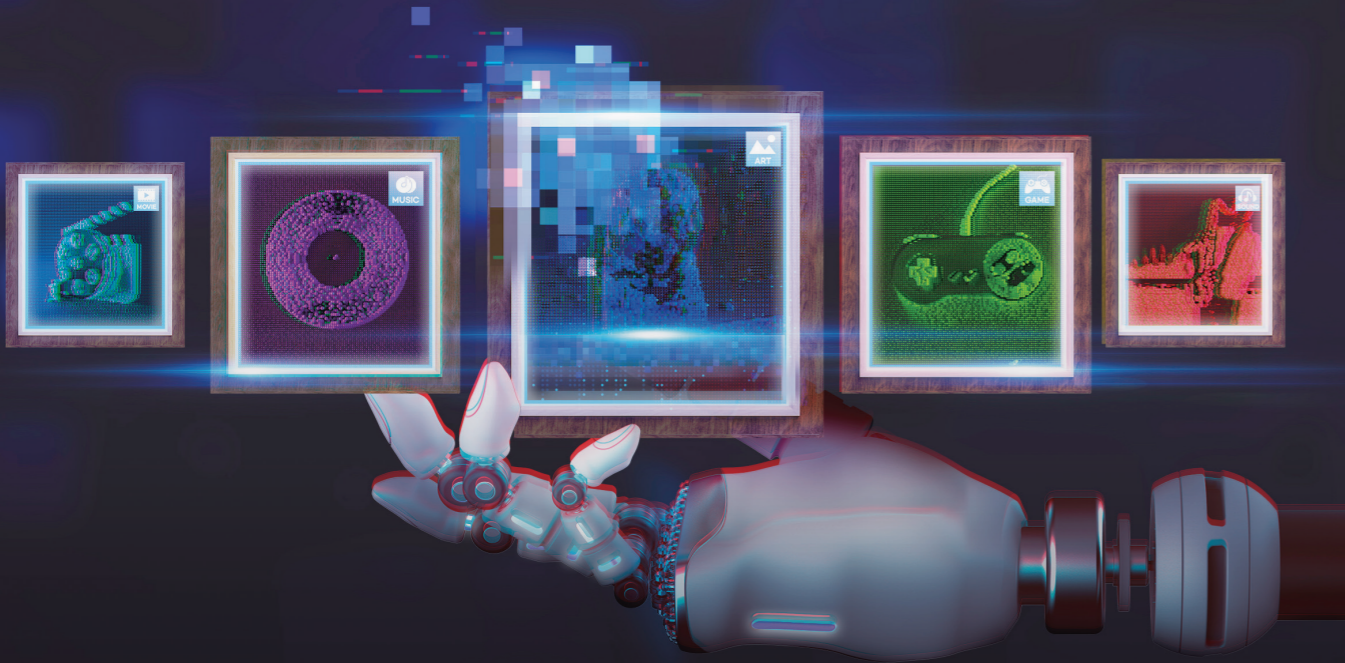


# AI 생성물의 저작권 등록 및 입법방안

김윤명

한림국제대학원대 게임산업전공 교수 | 디지털정책연구소 소장  
digitallaw@naver.com



## 서론

챗GPT와 같은 생성형(Generative) AI가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되면서 저작권 귀속, 환각(Hallucination)을 포함해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유무 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논의됐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미드저니나 챗GPT 등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산업재산권과는 다르게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발생에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창작이 완료된 시점부터 저작권은 존재하게 된다. 다만 저작권법은 권리발생 요건의 등록이 아닌 정책적 측면에서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을 등록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등록된 저작물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뤄진다. 반면 미국 저작권법은 침해소송의 요건으로 등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물론 등록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 창작물로 한정되므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되기 어렵다.

최근 미국 저작권청은 생성형 AI로 제작된 저작물의 등록에 대해 취소한 바 있다. <새벽에 자리아(Zarya of the Dawn)>로 알려진 그래픽 소설(Graphic Novel)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취소된 사건이다. 해당 저작물에 대해 작가는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와 자신이 창작한 텍스트를 결합해 편집물을 생성했고, 해당 편집물을 저작권청에 등록했다. 저작권청은 작가가 AI로 생성한 것임을 SNS를 통해 확인해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소명이 되지 않아 해당 저작물의 등록을 취소했다. AI로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AI가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문제는 AI가 생성한 것을 인간의 것으로 등록하는 경우이며,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에서 어느 수준까지 AI 또는 인간의 관여가 있어야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저작권청이 2023년 3월 16일에 발표한 「AI 생성물 등록가이드라인」<sup>1</sup>은 AI 생성물의 등록에 있어서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행 법제 하에서 AI 생성물의 등록을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sup>1</sup>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Federal Register, Vol. 88, No. 51, March 16, 2023

## AI 생성물의 등록 및 입법방안

### 1. 저작권 등록제도

#### 가. 등록의 의의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시적인 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일정한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분쟁 발생시 입증의 편익을 위한 추정적 효력을 부여”<sup>2</sup>하게 된다. 물론 저작권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요건은 아니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작품을 만들면 해당 작품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 베른협약 역시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sup>3</sup> 이처럼 저작권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저작권 등록이 저작물과 저작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고이저작물의 양산을 막고 저작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sup> 또한 저작권 등록은 입증책임의 전환을 가져온다. 등록된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지만, 등록된 저작물은 입증책임이 전환되므로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다.<sup>5</sup>

#### 나. 등록대상 저작물

기본적으로 저작권 등록이 되는 대상은 저작물이다. 따라서 사람이 관여한 AI 생성물 중 저작물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등록이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이 AI를 도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생성물도 또한 사람의 창작물로서 저작물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법 이외 보호받을 방법은 있다. 부정경쟁법리를 통해 투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sup>2</sup>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499면

<sup>3</sup> 베른협약 제5조 (2)권리의 환유와 행사는 어떠한 방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환유와 행사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협약의 규정과는 별도로,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sup>4</sup> 임원선,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345면

<sup>5</sup> 임원선,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349면

#### 다. 등록심사

저작권법의 규정 내용과 저작권 등록제도 자체의 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행 저작권 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이 등록관청의 심사권한이나 심사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등록관청으로서 당연히 신청된 물품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에 대해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등록관청은 이런 심사를 함에 있어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해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각 저작물의 독창성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제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sup>6</sup> 저작권 등록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단계를 거치게 되며,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된다. 다만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등에는 반려된다.

### 2. 등록대상으로서 AI 창작물

#### 가. AI 창작물의 법적 성질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을 통해 창작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AI가 생성한 것이 아닌, AI를 활용해 창작한 것을 AI 창작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다만 AI 생성물은 AI 창작물을 포함해 AI에 대한 인간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여 정도에 따라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저작물로서 AI 창작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관여된 것이 아닌 경우라면 비저작물 내지 콘텐츠로서 법적 성질을 가질 것이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는 콘텐츠를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즉,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창작하는 주체에 대한 한정이 없기 때문에 AI 생성물은 인간의 창작 기여도와 상관없이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콘텐츠 제작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AI가 생성하거나 창작하는 것은 콘텐츠 제작에 해당한다.

<sup>6</sup>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나. 등록대상으로서 저작물성 여부**

아직 인공지능은 어떠한 것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인간의 조작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인공지능의 운용이나 조작을 수행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SW를 포함한 기본적인 정보시스템은 사람에 의해서 조작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공지능의 운용은 도구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발자에 의해 매크로 내지 스크립트 형식에 따라 자동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사람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인간의 기여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7</sup>

**① 도구형 AI :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

인공지능이 도구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성 있는 아이디어가 부가돼 나온 결과물이라면 저작물로 볼 가능성이 높다.<sup>8</sup> 창작적 기여라하면 기본적으로 행위의 결과에 대해 다른 저작물과 차별성을 갖는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창작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판례는 일관되게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해 기술했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sup>9</sup>고 보고 있다. 따라서 타인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닌 정도라면 저작물성이 있다고 하겠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나, 명령어의 입력에 따른 자동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경우라면 이는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sup>10</sup>

**② 지시형 AI :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경우**

인공지능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라도 이를 활용한 주체인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다면,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상대적으로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물론, ‘인간의’라는 문구가 인간이 주체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것이 창작성이 있는 경우라면 저작물성이 부인되지 않을 것이다.<sup>11</sup>

<sup>7</sup> 김윤명,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이용 및 창작에 대한 법적 검토와 시사점”, 법제연구 no.51, 한국법제연구원, 2016, 215면  
<sup>8</sup> 김윤명, 전제논문, 215면  
<sup>9</sup>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sup>10</sup> 김윤명, 전제논문, 216면  
<sup>11</sup> 김윤명, 전제논문, 216면

대법원도 일관되게 ‘인간의’는 ‘사람의 정신적 노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도구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이 없는 경우라면 저작물성이 부인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본다.

**③ 자율형 AI : 인간의 관여가 전무한 경우**

현실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론적으로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작동할 수 있는 강한 AI가 도래할 경우에는 가능한 유형이다. 실상, 지시형 AI도 자율형 AI에 준해 법적 성질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자율형 AI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없으며,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만의 개정이 아닌 민법 등의 기초법 체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다. 정리**

이상과 같이, 3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인간의 기여도에 따른 권리범위

구분	지시형 AI		도구형 AI		자율형 AI	
유형 예시	생성형 AI 단순 활용	기계번역 창작적 활용	이미지 처리 SW	워드 SW	general AI (GAI)	
이용자 관여	프롬프트 입력	단순 변환	단순 변환 저작	저작	저작	자율
창작성 기여	프롬프트 O AI생성물 Δ	X	X	O	O	X
인간의 기여 수준	아이디어 제공 (일부 창작)	기계적 변환	변환	창작	창작	X
생성물 성격	비저작물 (일부 저작물)	복제물	복제물	저작물	저작물	비저작물
권리자	프롬프트 이용자 AI 생성물 이용자	원본 번역물	저작자 제공자	-	이용자 이용자	X
가공물의 2차적 저작물성	개작시	포스트에디팅 (교정, 교열)	개작시	개작시	개작시	개작시
등록 가능성	생성물 Δ <sup>12</sup> 가공물 O	X	X	O	O	-

\* 출처: 연구자 작성

AI 생성물의  
저작권 등록

1. AI 생성물의 등록시 고려사항

가. AI 생성물 등록의 전제조건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여부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를 가져올 수 있다. 저작물성이나 저작자 요건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저작권 부여 여부를 떠나 새로운 유형의 법적 분쟁 등 또 다른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가능성 및 인공지능 창작물이 현행 저작권 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응하는 새로운 저작권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한다.<sup>12</sup> 우선적으로 고려할만한 제도는 AI 생성물과 인간 창작물의 구분을 위한 등록제도 또는 표시제도이다. AI 창작물을 등록하는 것은 권리발생 요건이 아니다. 인공지능 창작물이 인간 창작물과 외견상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인공지능 창작물이라고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 창작물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고 한다.<sup>13</sup> 다만, 등록할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법정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나. AI 창작의 허위 등록

① 등록제도의 한계

AI 생성물에 대한 등록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제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 AI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성된 저작물 등의 유통환경의 변화와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의 증대는 권리의 불명확성이라는 무방식주의가 가지는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sup>14</sup> 무방식주의를 취하면서 등록을 유도한다면 실제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의 제도적 의의는 일정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공시해 저작물 정보와 저작권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렇지만 형식적인 사항만 심사한다는 점에서 저작물성과 저작자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렵다. 공식적으로 발간된 저작물 등에 표시된 정보나 등록서류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권리관계의 진정성을

<sup>12</sup> 한지영,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vol.31, no.3, 한국경영법률학회, 2022, 47면  
<sup>13</sup> 한지영, 전제논문, 48면  
<sup>14</sup> 김현경,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취급 차별화 방안 검토", 法學研究 vol.29, no.2, 2018, 148면

확인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저작권청이 AI 창작물의 등록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이유도 등록제도의 한계에 따른 것이다.

② 허위등록의 처벌

AI를 활용해 창작한 경우, 도구적으로 사용했다면 문제점이 없지만 지시형으로 생성된 결과물을 사람이 창작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작과 유사한 구조가 될 수 있다.<sup>15</sup>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 존부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제3자의 허위등록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더라도 등록제도를 통해 AI 생성물을 저작물로 등록하는 경우 허위등록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허위등록을 막는 예방적 조치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sup>16</sup> 즉,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되는 고의로 가짜 정보를 등록신청한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허위의 기재가 있다고 해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의나 인식은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허위등록을 부정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해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정해야 한다.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되는 저작권등록부의 기재 내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며, 단순히 저작자 개인의 인격적, 재산적 이익만을 보호하는 규정은 아니다. 한편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달라져 저작물에 대한 공공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저작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등록부의 중요한 기재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저작자 성명 등의 허위등록에 있어서 진정한 저작자로부터 동의 여부는 허위등록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sup>17</sup>



<sup>15</sup> 계승균, "대작과 저작권", 사법 통권 59호, 2022, 31면  
<sup>16</sup> 저작권법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2020. 2. 4.>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 실명·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해 실명·이명을 표시해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sup>17</sup>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4806 판결

## 2. AI 생성물의 저작권법상 인정방안

### 가. AI의 창작성은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가?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 체계하에서는 인간이 창작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AI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AI 창작물에 투하된 자본이나 노력이 타인에 의해서 무임승차 돼도 좋은가 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sup>18</sup>

생성형 AI에서 인간이 입력하는 명령어 형태인 프롬프트는 인간의 창작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AI 모델의 입장에서는 아이디어로 볼 수 있겠지만,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있는 경우라면 저작물로 볼 수 있다. 실제 프롬프트 시장에서 프롬프트가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프롬프트에 담긴 다양한 내용을 분석해 AI 모델은 인간의 의도를 파악해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볼 때, 프롬프트와 생성물은 의도와 결과라는 인과관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AI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9</sup> AI 생성물에 대해 저작물에 준하는 권리 및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AI 독점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DB제작 내지 콘텐츠 표시제도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기간의 설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EU DB지침도 단기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갱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에 논의가 필요하다. AI생성물을 개작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에 준하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AI 생성물의 보호에 따른 법리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나. 입법방안

#### ① 영국저작권법 제9조의 해석론

AI 생성물을 저작권법상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영국의 저작권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영국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컴퓨터에 기인하는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한 자로 본다”(제9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우리 저작권법도 영국 저작권법과 다르지 않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에 해당하면 되기 때문이다. 누가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는 다른 유형의 저작물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며, 형평성에 논란이 일 수 있다. 인간이 창작한 경우라면 당연히 저작물이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든 창작적 표현이라면 보호를 받는다. 다만 인간의 관여 없이 만들어진 저작물은 저작물성이 부인되는 반면 SW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저작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sup>20</sup> 따라서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는 해당하나, 다른 유형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해당하지는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법집행 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AI 창작의 인정가능성

AI가 자율적으로 창작하거나 인간의 관여가 없이 생성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AI 창작이 인정되면 그 권리는 누가 갖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 이용자, 서비스제공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헌법을 포함한 민법 등 다양한 법제의 개정이 필요하다. 2020년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돼<sup>21</sup>, AI 저작물에 대해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작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이라 함)의 정의규정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 로봇이 아닌 소프트웨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제작하는 창작물은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 또한 동 법안은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를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인공지능 저작물의 제작에 창작적 기여를 한 인공지능 제작자·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정의한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한 창작이나 창작적 기여를 한 자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인공지능을 제작하거나 서비스 제공자를 저작자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예를 들면 챗GPT를 제작하거나 이를 서비스에 제공하는 OpenAI가 해당할 수 있다. 물론 OpenAI를 업무상저작자로 보는 경우라면, 이용자를 공동저작자로 볼 여지는 있겠지만 그러한 전제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작자 내지 제공자를 저작자로 보는

18 차상욱, “인공지능 창작물 관련 저작권 침해 쟁점”, 경영법률 vol.32, no.4, 한국경영법률학회, 2022, 45면

19 배대현 외, “제너러티브 아트의 보호에 관한 시론”, 계간저작권 제35권 제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278면; 한지영, 전계논문, 54면

20 김윤영, 전계논문, 222면

21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6785호),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2020.12.21

것은 저작자 일반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개정안 제10조 제3항에서 저작자는 창작적 기여도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AI를 활용한 경우는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다양성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정의에서 저작자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저작자 요건을 위임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동 법안은 5년을 존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등록과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임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는 저작물의 창작과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sup>22</sup> 문제는 AI를 도구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도 보호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일반적인 SW를 활용해 창작한 것과 차이가 없다는 점, 보호기간이 짧기 때문에 AI 창작으로 등록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에서 실현가능한 방안인지 의문이다. 또한 등록을 강제하는 것이 무방식주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나,<sup>23</sup> 실상 AI 창작에 대한 등록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정책적으로 저작권 이외의 보호체계라는 점에서 배른협약 등의 위반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AI 저작권 등록 가이드라인**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AI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필요하다. AI 생성물과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만 저작물로서 등록이 가능하다.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물성의 인정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이와 관련된 권리처리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① AI 창작물 : 도구형 AI에 의해 창작된 경우**

도구형인 경우라면, AI가 활용된 것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창작물 등록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단순한 조작인 경우라면 도구형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AI 창작물로서 등록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AI 생성물이 창작물로서 저작권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AI를 도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생성된 결과물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sup>22</sup> 임재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2, 4면  
<sup>23</sup> 임재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2, 6면

**② AI 콘텐츠 : 지시형 AI에 의해 생성된 경우**

AI를 도구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인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지시형은 불분명하다. 인간의 관여에 대해서 AI 모델과의 기술적인 인과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저작권청의 가이드라인은 AI의 관여가 지시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저작권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AI에 단순히 지시해 생성된 경우라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이뤄지기 어렵다. 물론, 지시형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그 자체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에 해당할 수는 있다. 인간이 제작자로 정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생성된 콘텐츠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AI 생성물을 개작해 2차적 저작물 또는 이에 준하는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저작물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③ AI 생성물 : AI가 스스로 생성한 경우**

지시형이나 도구형과 다르게, AI가 스스로 생성한 경우는 인간이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물이나 콘텐츠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이나 생성의 주체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인간에 한정되기 때문에 인간의 관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자율형 AI가 생성한 결과물도 권리의무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정리 - 유형화의 한계**

위 3가지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기여도에 따른 결과물의 성질

구분	AI 창작물	AI 콘텐츠	AI 생성물	저작권 등록
창작적 기여 (도구형 AI)	○	-	-	가능
인간 지시 (지시형 AI)	△ (구체적 지시)	○	-	불가
AI의 자율 (자율형 AI)	-	-	-	불가
적용 법률	저작권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공유영역 (Public Domain)	-

\* 출처 : 연구자 작성



AI에 대한 인간의 관여 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을 구분했으나, 이 유형화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AI 모델에 있어서 도구형과 지시형 모델이 혼재돼 있어 그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sup>24</sup> [표 1]에서도 이미지 처리 방식의 AI 또한 지시형과 도구형으로 구분되는 등 현실적인 구분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머지않아 생성형 AI의 결과물도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구분의 필요성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 결론

AI 생성물과 인간 창작물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더욱이 AI의 생성은 인간의 생성능력보다 월등하다. 무엇보다 AI 모델은 다양한 콘텐츠를 24시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여러 가지 정책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 자체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을 통해 AI 생성물에 대한 제도화를 고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AI 생성물과 인간 창작물의 구분을 통해 저작권법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의 목적규정은 저작권 제도를 관통하는 가치를 갖고 있다. 권리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창달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다.

<sup>24</sup> 박성호,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 귀속 문제", 법률신문, 2023.3.16.일자

따라서 AI 생성물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을 관통하는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에 부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저작권 등록제도를 들 수 있다. 현행 등록제도는 무방식주의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심사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에 따라 AI 생성물과 인간 창작물의 구분이 쉽지 않으며, 새로운 창작으로서 AI 생성물의 유형을 인간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해 등록대상 저작물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유형화했다. AI가 인간 능력이상의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인간의 창작과 구분되는 제도는 필요하다. 인간의 창작을 유인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AI 생성물을 인정할 경우, 저작권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즉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인간의 것으로 등록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허위로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해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의 양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AI 윤리는 저작권제도에 있어서 하나의 해결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정보의 독점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다. 차제에 저작권법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저작물의 창작 수준이나 저작권의 등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